5. 학사학위취득 유예

- 가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신청자격: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교과목 재수강 또는 자기개발이 목적인 학생 ※ 조기졸업 신청자 및 국제학생은 신청 제외하며, 자기개발 목적으로 유예를 신청한 자는 (재)수강신청 불가함
- 다. 유예기간 및 횟수: 학기 단위로 2회(총 1년)까지 허용
- 라. 신청방법: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 → 학사관리 →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
- 마. 등록금 납부
- 1) 교과목의 재수강을 위해 수강신청한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기준에 따라 등록금 납부
- 2) 자기개발이 목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감면(※ 직업설계세미나(1), (2) 수강한 경우 포함)

바. 유의사항

- 1)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
- 2) 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일 전까지 유예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- 3)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음
- 4)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됨
- 5) 유예 신청자격과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병역기피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
- 사. 기타 졸업연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'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'에 의한다.